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안철수 · 조승환
강승규 · 조정훈 · 서천호
임종득 · 조배숙 · 박성훈
김민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,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,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,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.

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,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,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46조의2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6조의2제1항 중 “1명을,”을 “수인을,”으로, “1명을 각각”을 “수인을 각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직후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<u>1명</u> 을,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<u>1명</u> 을 <u>각각</u> 둔다. ② ~ ④ (생략)	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인</u> 을, ----- ----- <u>수인</u> 을 <u>각각</u> 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